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 주기

가. 보험기간

1년 만기

나.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만15세 ~ 80세

라.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총 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남자, 여자)를 적용할 수 있다.

1) 평균보험료율은 계약의 체결시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료율은 계약체결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2) ‘1)’의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동일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대하여 ‘가’ 및 ‘나’의 성별·나이별 보험료율, 평균보험료율 및 평균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고액계약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당해년도 예정사업비내에서 할인을 한다.

가. 할인대상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가 1,000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나. 할인율

가입단체별로 계약체결시 매 보험기간 초 납입한 환산연납영업보험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환산 연납 영업보험료 | 할인율 |
|-------------------------|-------|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0.0% |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10.0% |
|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15.0%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20.0% |
| 1억원 이상 | 20.0% |

다. 할인금액

단체별로 당해보험기간에 납입할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에 ‘나’의 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할인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할 영업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

$$\text{할인액} = \text{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 \times \text{할인율}$$

(주)

$$\text{환산연납영업보험료} = \frac{\text{납입할 영업보험료 (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k}$$

다만, k는

| 납입주기 | 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
| k | 0.0848 | 0.2535 | 0.5045 | 1 |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계산하며 할인

율은 표준이율로 계산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적용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1계좌(보험가입금액 500만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1,000만원으로 함

나. 대상단체 및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1) 대상단체

이 보험의 대상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③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1)’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② ‘1) 대상단체’의 ‘②’ 및 ‘③’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 등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 1)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보험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다.)
- 2) ‘1)’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1)’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변경 전·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변경 전·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마.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단체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바.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